


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작성 및 제공 제도 안내



🔊 **잘못된 정보제공! 중독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**

- 🔔 '22년 창원 소재 전자제품 부속품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클로로포름 구성성분이 누락되어 급성중독 발생
- 🔔 '24년 인쇄업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세척제 성분확인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성분 외 벤젠, 시클로hex산 검출

🔗 **물질안전보건자료 법적근거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

-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「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」
-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「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」

🔊 **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방법**

- 📅 **제공시점** ① 최초 공급 시 ② 내용 변경 시 ③ 사용자 요청 시
- 📄 **제공방법**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(PDF, 이메일 등)
- 🗣️ **제공언어** 한국어 기준(단, 시험·연구 목적으로 사용 시 외국어자료 제공가능)

화학물질 유통업자의 핵심 역할(Key point)

①

**정확한
정보제공**

제조, 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하게 제공

②

**MSDS
작성제공**

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제조 후 판매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하여 제공

③

**주기적
확인**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변경사항 발생 시 구매자에게 제공

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기

일하는 장소의 화학물질을 알면
건강이 보입니다.



화학물질 노출정보 알기이란?

-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공기 중 화학물질을 직접 채취하고 결과를 안내받는 서비스
-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벌크시료로 채취하여 공단분석실로 송부 시 구성성분 등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

지원내용



시료채취기 무료 신청하기

무료 시료채취기 제공

시료채취기 분석결과 제공

화학물질 건강위험 정보 제공

화학물질 구성성분
분석 및 정보제공

해당 사업의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.

신청안내

QR코드를 통해 접속

로그인(휴대폰 번호로 인증)
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신청가능

시료신청

공단에서 시료채취기
무료제공(배송)

시료 수령 및 시료채취
시료에 동봉된 안내문 또는 QR코드 영상에 따라 작업 중 시료 채취

시료를 밀봉하여
공단분석실로 시료발송(착불)

시료접수 후 약 2주 이내
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

작업명	채취시간(분)	분석물질	노출수준	위험수준	개선조치단계
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크실렌	높음	●	현상태 유지 또는 개선
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유기화합물	낮음	○	
작업	시료에서 채취된 물질	에틸벤젠	매우 높음	●	위험수준에 따른 조치단계
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농도 등을 반영한 위험수준 표시			
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			
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유기화합물	불검출		

권역분석실	연락처	FAX
서울광역본부	02-6711-2832	02-6711-2839
인천광역본부	032-510-0567	032-510-0579
대전세종광역본부	042-620-5634	042-636-1938
부산광역본부	051-520-0615	051-520-0619
대구광역본부	053-609-0547	053-421-8624